

의안번호	제 47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발의연월일	2020년 6월 29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영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74
----------	-----

발의연월일 : 2020년 6월 29일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찬 성 자 : 이숙애, 박성원, 임동현,
이의영, 황규철,
박문희 의원

1. 제안 이유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장기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 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 4조)
- 라. 지원 대상(안 제5조)
- 마. 지원 방법 등(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103호
(2020. 6. 22. ~ 2020. 6. 26.)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填)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4.>

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 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 2010. 3. 24.>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전문개정 2007. 12. 21.]

[별지 제2호서식]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예측할 수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043-290-2829)